

진흥법제로서의 공공디자인법 진단과 개정 방향 연구

Assessing Public Design Promotion Act as Promotional Legislation : Directions for Legislative Reform

주 저 자 : 육근형 (Yook, Keun Hyung) 서울특별시청 미래공간담당관 공공건축1팀장

교 신 저 자 : 장영호 (Jang, Young Ho)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공공디자인전공 교수
nagoyajang@hongik.ac.kr

<https://doi.org/10.46248/kidrs.2025.4.809>

접수일 2025. 11. 09. / 심사완료일 2025. 11. 26. / 게재확정일 2025. 12. 08. / 게재일 2025. 12. 30.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ublic Design Promotion Act through the lens of promotion jurisprudence and proposes directions for legislative reform. Drawing on promotion jurisprudence theory, the analysis compares the Act with analogous legislation governing tourism, social enterprises, green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services. Five structural deficiencies emerge: ambiguous statutory purpose and scope, insufficient implementation mechanisms, absence of monitoring and feedback protocols, jurisdictional overlap with related statutes, and inadequate expert-institutional foundations. To address these shortcomings, a seven-chapter revised framework is advanced. The proposed amendments delineate definitional boundaries and regulatory scope, institutionalize integrated planning-implementation-evaluation-feedback processes, establish unified deliberative bodies, mandate specialized personnel and dedicated agencies with secured funding, and provide for information systems coupled with performance transparency requirements. These revisions aim to strengthen policy coherence and administrative capacity, thereby advancing urban environmental quality and public welfare.

Keyword

Promotion Legislation(진흥법제), Public Design(공공디자인), Legal & Institutional Reform(법·제도 개선)

요약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진흥법제 관점에서 분석하고 개정 방향을 모색한다. 진흥법 제 이론에 근거하여 관광·사회적 기업·녹색 건축·건축 서비스 등 유사 법률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 법령 문헌 및 계획, 운영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목적과 범위의 포괄성, 집행 수단의 결여, 평가 및 환류 시스템의 부재, 타 법과의 중복, 전문성 기반의 취약성이 주요 한계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정의 및 범위의 명확화, 계획-집행-평가-환류의 제도화, 통합 심의, 전문인력·전담 기관의 설립과 기금 도입, 정보 체계·성과 공개를 포함하는 7장 체계 개정안을 제안한다. 이는 정책 정합성과 집행력을 강화하여 도시 환경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진흥법제의 이론적 고찰

- 2-1. 진흥법제의 개념과 입법적 의의
- 2-2. 진흥법제의 일반 구조와 구성 요소
- 2-3. 국내 진흥법제 사례 비교

3. 공공디자인법의 구조적 진단

- 3-1. 제정 배경과 법률 체계

3-2. 진흥법제 관점에서의 구조적 한계

3-3. 소결

4. 공공디자인법 개정의 방향과 기본체계

- 4-1. 개정의 기본 원칙과 방향
- 4-2. 법률 체계안과 주요 내용

5.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공공디자인은 도시 환경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핵심 정책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공공간과 시설물의 디자인 수준 향상을 통해 국가 및 지역의 경체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려는 정책적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2016년 2월 3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8월 4일부터 시행하였다.¹⁾ 이 「공공디자인법」은 규제 중심의 전통적 도시관리 법제와 달리 지원 중심의 정책 수단을 채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특정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 추진의 근거를 확보하고 재정 지원, 조직 체계 구축 등의 수단을 마련하는 법체계를 진흥법제라고 한다. 「공공디자인법」 역시 이러한 진흥법제의 하나로서 「공공디자인」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육성 의지를 공식화한 입법적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공공디자인법」은 제정 이후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선 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책의 구체적인 대상과 우선순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²⁾ 또한 법률 명칭에 「진흥」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문에 명시된 지원 수단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집행력이 약하다는 평가가 있다.³⁾ 아울러 「공공디자인」 정책이 건축·도시계획·조경 등 인접 분야의 법령들과 역할 분담 관계가 모호하여, 법체계 측면에서 중복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⁴⁾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체 성과분석에 따르면, 「공공디자인법」을 근거로 추진된 사업과 계획에 대한 성과 평가 및 환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의 결과를 점검하고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피드백 과정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⁵⁾ 더욱이 중앙과 지방

차원에서 공공디자인 전문기관이 부재하고, 행정 조직 내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민간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제가 미비하여 정책 추진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⁶⁾ 이처럼 정책 정합성 결여, 집행력 미흡, 환류 부족, 전문성 기반 약화 등의 문제가 「공공디자인법」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공디자인법」을 진흥법제의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법 제도적 보완을 통해 「공공디자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공공디자인법」의 구조 및 운영 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다른 분야의 진흥 법제와 비교하여 구체적인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표로 삼았다. 우선, 「공공디자인법」의 조문 구성과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후, 「관광진흥법」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사회적기업법」) 등 유사한 성격의 진흥 법률과 그 입법 목적, 지원 수단, 추진 체계를 구조적으로 비교하였다. 예를 들어, 「관광진흥법」은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을 통해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사회적기업법」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서비스 확충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각 법률은 명확한 목표와 체계적인 지원 수단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공공디자인법」의 구조적 특성과 한계를 파악하였다. 정책의 정합성과 집행력 측면에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공공디자인법」 제5조를 근거로 수립된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의 추진 내용과 성과를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법 시행 후 나타난 정책 효과와 한계를 진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법제 비교 분석과 사례 연구를 연구방법으로 병행하였다. 「공공디자인법」 및 관련 진흥법의 조문과 제도를 조형별로 대비 분석하는 질적 비교연구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각 법체계가 지닌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문헌 검토 및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이론적 토대를 견고히 하였다. 정책 자료 분석 및 관계자 의견 청취를 통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과 집행 단계에서 제기되는 실무 쟁점을 포착하였다. 이러한 학술적 토대 위

-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27호, 제정 2016.2.3.; 시행 2016.8.4.), <https://www.law.go.kr/법령/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채완석, 「공공디자인 관련 기준 개정 방향 연구」, *한국디자인리서치*, 2024.6, 9(2), pp.193~194
- 3) 육근형, 「공공디자인의 실효적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7, pp.85~86
- 4) 오성훈·유광흠·성은영 외 2인, 「공간복지기본법 제정 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2020.5, pp.24~28
- 5) 최성호,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성과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리서치*, 2022.12,

7(4), pp.315~323

- 6) 김영·이현성·김주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위원회 운영 및 심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5(5), 172~173

에서 공공디자인법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정책의 정합성 강화, 집행력 제고, 환류 체계 확립 및 전문성 증진에 기여할 입법적 개선방안 도출에 연구의 무게중심을 두었다. 환류 강화와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2. 진흥법제의 이론적 고찰

2-1. 진흥법제의 개념과 입법적 의의

진흥법제란 법률 명칭에 '진흥', '지원', '육성', '촉진', '조성' 등의 용어를 포함하여 특정 산업이나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조치를 규정한 법률 유형을 말한다.⁷⁾ 우리나라에서도 「산업디자인진흥법」, 「사회적기업법」, 「학교체육진흥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진흥법제가 제정·운영되고 있다. 진흥법제가 가지는 입법적 의의는 정부가 새로운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 역할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진흥법제는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지원을 쉽게 하며, 명확한 목표 설정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됐다. 또한 진흥법제는 전통적인 규제법과 구별되는 적극적 성격을 지닌다.

규제법제가 국민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여 통제하는 소극적 수단이라면, 진흥법제는 국가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산업·기업·계층·지역 등의 발전을 장려하는 적극적 수단에 해당한다.⁸⁾ 다만 진흥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일부 규제적 요소가 법률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가 다른 공익과 충돌할 때는 법제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⁹⁾

진흥법제는 그 내용과 규제 방식에 따라 「영재교육 진흥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과 같이 일정한 규제적 요소를 포함하는 유형과 「과학교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과 같이 순수한 지원 및 장려 조치에 중점을 두는 급부 위주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분류는 각

법률의 정책적 접근 방식을 이해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분석 기준을 제공한다.¹⁰⁾ (표 1 참조)

[표 1] 진흥·지원·육성·촉진·조성 수단별 진흥법제 분석

구분	법률
규제 사항 종 신 진흥법제	「영재교육진흥법」「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공간산업 진흥법」「조경진흥법」「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항공운송사업 진흥법」「식품산업 진흥법」「외식산업 진흥법」「삼차원프린팅 산업 진흥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건설기술진흥법」 등
급부 사항 전 용 진흥법제	「과학교육진흥법」「대학도서관진흥법」「도서·벽지 교육 진흥법」「인성교육진흥법」「학교도서관 진흥법」「학교체육진흥법」「학술진흥법」「김치산업진흥법」 등

2-2. 진흥법제의 일반 구조와 구성 요소

대부분의 진흥법제는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유사한 법률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법률은 총칙, 기본계획 및 추진 체계, 지원 및 육성 시책, 평가 및 환류, 보칙 및 벌칙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정책의 수립부터 실행 및 사후 관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괄한다.

총칙 부분에서는 법률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정부의 책임과 타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함으로써 해당 진흥 정책의 이념적 기반 및 적용 범위를 설정한다. 기본계획 및 추진 체계 부분에서는 정부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의무와 추진 조직(위원회, 진흥원 등)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하여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지원·육성 부분은 지원 대상 선정 요건과 절차, 재정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 개발 및 국제 협력, 교육·홍보 등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포함하며, 이는 진흥법의 실효성을 결정짓는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평가 및 환류 부분에서는 수립된 계획의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과 책임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보칙에서는 법률 시행을 위한 행정 사항과 벌칙 규정을 규정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한다.

대부분의 진흥법제는 이와 같이 계획 수립·집행·평가·환류로 이어지는 일련의 구조를 법체계에 내재화하

7) 손현, '진흥관련 법제의 입법 모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7, pp.23~28

8) 윤인숙, '문화산업 진흥·육성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22.8, pp.199~201

9) 박종준, '산업진흥법제의 규제혁신을 위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8, pp.81~92

10) 진흥법제를 ① 규제호업형 ② 급부증심형으로 분류하면서 전자의 예시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등을, 후자의 예시로 「학교체육진흥법」·「과학교육진흥법」 등을 제시 손현, op.cit., pp.31~33

고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피드백을 통한 목표 달성의 향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비록 법률마다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존재하나, 진흥 정책의 수립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하는 유사한 체계를 보여준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표 2 참조)

[표 2] 진흥법제의 일반적 구성 체계

구성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국가와 지방정부의 임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 시행계획, 전담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제3장 지원·육성	지원 대상의 선정, 재정 지원 규정,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 등
제4장 개발 및 사업	단지 조성, 개발 계획 수립
제5장 보조	수수료, 보고 및 검사, 청문, 벌칙, 과태료 등

2-3. 국내 진흥법제 사례 비교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진흥법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관광산업, 사회적 경제, 친환경 건축, 건축 설계 서비스산업 등 분야별로 「관광진흥법」, 사회적기업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건축서비스법) 등 여러 진흥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들 법률은 다루는 정책 분야는 서로 다르지만, 정부 주도로 해당 분야의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표 3 참조)

[표 3] 주요 진흥법제의 목적 비교

법률명	목적(제1조)
관광진흥법 (1975년 제정)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
사회적기업법 (2007년 제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녹색건축법 (2013년 제정)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
건축서비스법 (2013년 제정)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 편의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관광진흥법」은 1975년에 제정(시행 1976년), 현재 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

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년마다 관광개발 기본계획(법 제49조)을 수립하여 국가관광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또한, 법 제70조에 근거한 관광특구 제도를 통해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 구역에서 관광자원의 집중적 개발을 추진하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 관광 사업자에게 융자나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관광기반 조성에서 재정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에 제정된 사회적기업법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5년마다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으며(법 제5조), 이를 위해 고용정책 심의회 등 다양한 심의 기구를 통해 정책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법 제8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재정 지원, 경영 컨설팅, 판로 지원, 전문인력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보조 등 여러 가지 육성책을 제공받는다. 이러한 체계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의 확충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구조이다.

녹색건축법은 2012년에 제정되어 저탄소·친환경 사회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5년 단위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절약형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녹색건축 기준의 적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민간 건축물의 경우 녹색건축 인증을 취득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축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녹색성장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건축서비스법은 2013년에 제정되어 건축기획 등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력양성, 기술개발, 해외진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 제22조의2부터 제25조는 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건축진흥원 등의 조항을 두어 산업 기반 구축과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는 해당 분야의 진흥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나타난다. 이

러한 선행 사례들은 공공디자인법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진흥법제를 설계할 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명확한 정책 목표 설정,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전담 추진체계 구축, 재정지원 수단 마련, 성과평가 및 환류 등의 요소를 법률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진흥법제 설계의 핵심임을 보여주고 있다.(표 4 참조)

[표 4] 주요 진흥법제 비교

구분	제정 목적	법률 구성	기금·재정 지원	위원회 체계
관광 진흥법	관광 산업 기반 조성 및 진흥	기본계획·특구 기금·세제	관광 진흥 기금·세제 감면	관광 진흥 심의위원회
사회적 기업법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	인증제도·재정 지원위원회	중앙·지방 재정지원	사회적 기업 심사위원회
녹색 건축법	저탄소 녹색 성장 실현	기본계획·인증·기술개발·인력 양성	융자·정부 출연금·세제지원	녹색 건축 물 조성지원위원회
건축 서비스법	건축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혁신 기업 인증·해외진출·전담기관	연구 개발비·혁신 기업 지원금	진흥 계획 심의·인증 위원회

3. 공공디자인법의 구조적 진단

3-1. 제정 배경과 법률 체계

공공디자인법 제1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의 경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공디자인의 공공가치와 미적 기능을 강조하는 입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법률은 총 6장으로 구성되는데, 제1장 총칙에서는 용어 정의와 국가·지방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2장(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등)에서 5년 단위의 국가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 체계를 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제4장에서는 개별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원칙과 부처 간 자문·협의 절차를 규정한다. 제5장은 전문인력 양성, 재원 조성 등 진흥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며, 제6장은 보칙 조항으로 마무리된다. 이러한 구성은 형식적으로 일반적인 진흥법제의 틀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법 제정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법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를 범위로 하는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제1차 계획은 ‘생활 안전을 더하는’, ‘모든 이를 위한’, ‘생활 편의를 더하는’, ‘생활 품격을 높이는’, ‘기초가 튼튼한’의 5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공공공간·건축물·시설물·공공용품·시각이미지·서비스 전반에 걸쳐 공공 영역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또한 각 지방정부에서도 이 법에 근거한 지역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여, 서울시·부산시·대구시 등 주요 지자체는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체적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실행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3-2. 진흥법제 관점에서의 구조적 한계

설영동(2024)은 현행 공공디자인법이 목적 조항을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정책 추진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대상,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¹¹⁾ 진흥법의 목적 조항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상위 비전과 하위 실행체계를 연결하는 기준점이 되어야 하나, 공공디자인법 제1조는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 등 추상적 목표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을 뿐 구체적 우선순위나 범주를 한정하지 않아 실행 단계에서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또한 공공디자인의 개념이 경관, 건축, 문화정책 등 여러 분야와 교차하는 만큼,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를 통해 적용 범위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더욱 명료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공공디자인 분야가 경관·건축 등 인접 영역의 하위 개념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진흥 영역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법체계 정비가 선결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공공디자인법 제5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계획의 법적 위상이나 실행·평가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종합계획은 선언적 성격에 머무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계획 연계나 부처 간 협력의 근거도 미흡하다. 실제로 제1차 진흥 종합계획 기간(2018~2022) 동안 전국에서 약 1,639건의 공공디자인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법령 차원의 성과평가 및 환류 장치 부재로 인해 정책 추진 결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에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기간 동안 추진된 공공디자인 사업의 전략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11) 설영동, ‘가치기반 공공디자인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pp.50-55

[표 5] 공공디자인 사업 분포(2017~2022년)

구분	내용	건수	비고
분석대상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1,639	공공디자인 사업
생활안전을 더 하는 공공디자인 - 범죄예방	범죄예방(CPTED 등) 관련 공공디자인 사업	147	생활안전 전략 내 범죄예방 중심 사업
생활안전을 더 하는 공공디자인 - 생활안전	보행 교통·재난 등 생활안전 관련 공공디자인 사업	377	일부 사업은 범죄예방 사업과 중복 분류 가능
모두를 위한 공공디자인	보행약자·장애인·고령자 등 접근성 개선 관련 공공디자인 사업	269	‘모두를 위한 공공디자인’ 전략 관련 사업
생활편의를 더 하는 공공디자인	교통·관광·주거 편의 증진 관련 공공디자인 사업	221	안내체계·편의시설 개선 등 포함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마을도시 품격 및 시각미지 개선 관련 공공디자인 사업	679	생활품격 및 도시미지 개선 중심 사업 다수

다른 진흥법들이 기본계획-시행계획-성과평가-환류로 이어지는 일련의 구조를 명문화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공공디자인법의 계획 체계에서는 실행과 환류 단계가 제도적으로 빠져 있다¹²⁾고 볼 수 있다. 특히 진흥 종합계획이 지역계획 수립에 있어 진흥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 약 3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도 발표가 미루어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 수립에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현행 공공디자인법은 지원 수단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한계를 보이는데,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공공디자인 지원센터 지정 등의 제도가 일부 운영되고 있으나 재정적 지원이나 인센티브 부여, 우수 사례 인증, 기금 운용 등의 핵심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다. 많은 진흥법제가 재정 지원 수단과 함께 인증·포상 제도,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한 데 반해, 공공디자인법에는 이러한 유인의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 동력이 제한되고 있으며, 실제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참여를 독려할 만한 법적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사업의 질과 지속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12) 공공디자인법은 기본계획의 실행 및 성과에 대한 체계적 평가와 피드백 절차가 제도적으로 미흡하여, 정책 결과의 환류와 개선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 최성호, op.cit., pp.314~323

공공디자인은 「경관법」, 「건축기본법」, 「건축법」 등 여러 법령이 다루는 공공공간 관리 영역과 중첩되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공공디자인 분야의 역할과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법률 간 중복과 충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¹³⁾ 예를 들어 경관계획이나 건축위원회의 설계 심의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공공공간과 경관 요소를 다루는 반면, 공공디자인법은 주로 사업 시행과정의 사후적 협의에 초점을 두고 있어 설계 단계의 통합적 심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더욱이 공공디자인법에는 경관위원회나 건축위원회 등 타 법정 위원회와의 통합 심의를 위한 근거가 없어서, 같은 사업을 놓고 여러 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자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디자인법이 실질적인 진흥법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규제적 요소는 가급적 기존 관련 법령에 맡기고, 공공디자인법 자체는 진흥 사업과 지원 절차에 집중함으로써 법률 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시너지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표 6 참조)

[표 6] 공공디자인 관련 제도 비교

구분	공공디자인법	경관법, 국토계획법 등	건축기본법, 건축법
주요 대상	공공기관 설치·관리 시설물 및 공공용품	경관자원, 공공공간, 옥외광고물	건축물 및 공공공간 설계안
위원회(주체)	공공디자인위원회(문화부)	경관위원회(환경부 등)	건축위원회(지자체)
절차 및 기준	5년 계획 수립 후 협의체 운영	10년 경관계획 수립, 경관심의	건축허가 전 설계안 심의

3-3. 소결 : 진흥법제로서의 구조 재편 필요성

공공디자인법이 실질적으로 진흥법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법 구조의 전면적인 재편이 필수적이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공공디자인법의 핵심적인 결손 요소는 정책의 정합성, 실효성, 환류성 및 지원체계의 미비로 요약될 수 있다. 법 제정 당시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 제고를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의 법률 구조와 조문의 구성은 일반적인 진흥법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집행 및 성과 환류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법의 목적 규정과 기본 원칙을 보다 구체화하여 정책 기획에서 집행 및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공공디자인법 제1조의 포괄적 선언을 실행 가능한 정책 방향으로 연결

13) 최성호, 공공디자인법과 경관법의 역할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17, p.616.

하고, 국가 및 지방정부의 책무 규정을 통해 타 법령과의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율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체계적 구조화가 필수적이며, 중앙정부의 종합계획과 지방정부의 지역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계획 수립·집행·평가·환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법령에 명문화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

지원 수단 측면에서도 큰 폭의 보완이 필요하다. 최근 실태조사 결과, 공공디자인 사업비 구조에서도 경관사업의 급격한 축소와 비경관 공공디자인 사업의 확대가 확인된다.(표 7 참조)

[표 7] 공공디자인 관련 제도 비교

구분	기간 (연도)	금액 (억원)	변화율 (%)	주요 특징
공공디자인 총 사업비	2019~ 2020	2,216-		경관사업을 포함한 전체 공공디자인 사업비
	2021~ 2022	1,908	△13.9	COVID-19, 경관사업 축소 등으로 총사업비 감소
경관 제외 공공디자인 사업비	2016~ 2017	1,350-		총 2,850억 중 경관사업 약 1,500억, 비경관 1,350억 수준
	2021~ 2022	1,859	△37.3	5년간 약 509억 순증가
경관 사업 비중(총사업 비 대비)	2016~ 2017	-	약 52.8	공공디자인 사업 중 경관사업 비중이 과반을 차지
	2021~ 2022	-	약 2.6	경관사업 급감, 비경관 공공디자인 분야 확대

현재 공공디자인법은 재정 지원, 인센티브, 인증 및 포상, 기금 조성 등 진흥법으로서 적절한 수단이 부족 하므로, 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지원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디자인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우수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증 및 포상 제도를 마련하여,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에 대해 세제 혜택이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신설함으로써 정책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부문 간의 연계를 위한 전문 전담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의 강화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전담기관은 단순한 집행기관의 역할을 넘어 정책 기획, 평가, 교육, 국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허브로 기능함으로써 공공디자인 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공디자인법을 진흥법제의 보편적 구조

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단순한 법률 개정 작업이 아니며, 공공디자인을 국가 정책의 독립된 영역으로 확립하기 위한 법제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서만 공공디자인 법 제정의 취지인 도시 환경의 질 향상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정책 도구로서의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4. 공공디자인법 개정의 방향과 기본체계

4-1. 개정의 기본 원칙과 방향

공공디자인법의 개정은 진흥법제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개정 방향은 네 가지 기본 원칙에 기초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첫째, 법체계 전반의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디자인 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 관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법률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법 제2조에서 정의된 공공디자인을 시설물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제공·관리하는 공간, 시설, 용품, 정보 및 서비스 등 공공 영역 전반에 걸쳐 공공성, 심미성, 기능성을 구현하기 위한 창의적인 문제 해결 활동"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재정의는 물리적 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공공서비스 디자인 및 시민참여 디자인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정부 조례 간의 상이한 해석을 방지하고 정책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경관법」과 「건축기본법」 등 인접 법령 간의 적용 우선순위와 조정 원칙을 명시하여 법률 간의 충돌과 중복을 최소화하고, 공공디자인 정책의 독립적인 영역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흥계획의 수립을 예산 확보 및 사업 실행과 법적으로 연계하고, 이행 점검과 평가 절차를 의무화하여 계획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흥계획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의 의무뿐만 아니라 집행, 평가 및 환류의 전 과정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의 5개년 종합계획과 지방정부의 연차별 시행계획 간의 연계 조항을 신설하고, 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예산 반영 의무를 명시하며,

매년 또는 계획주기 종료 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환류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이 체계는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장치로 기능하며, 제1차 진흥계획 적용기간 동안 나타난 법령 차원의 성과평가 및 환류 장치의 부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셋째, 평가 및 지식 교환의 제도화를 통한 선순환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여 성과평가 결과를 후속 계획 수립에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지속적인 정책 강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이니셔티브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디자인 위원회, 경관위원회,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와 같은 위원회의 개별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복 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도 관련이 있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통합 또는 공동 검토의 토대를 명확히 하고,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 관련 위원회의 공동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고, 설계 단계에서 통합 검토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면서 특정 법적 규정이 필요한 경우 보충 검토를 허용하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이는 행정 효율성과 설계 품질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전담주체의 설립, 전문인력 배치의 규정, 특별 회계 또는 기금의 조성 등을 통해 정책 추진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도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적·재정적 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정법에서는 공공디자인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자격 및 활용 방법을 명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에 공공디자인 전문지식을 갖춘 개인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또는 복잡한 프로젝트의 경우 일반 디자이너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시작부터 완료까지 디자인의 일관성 있는 관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공공디자인 진흥원을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 법인으로 지정 또는 설치함으로써 중앙, 지방, 민간부문을 연계하는 정책 네트워크의 넥서스 역할을 하는 동시에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현황, 전문인력 등록 데이터, 과학 발전을 위한 모범사례 등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조항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정책 및 개선에 있어 대중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정기적인 사실조사 및 통계분석을 실시할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홍보계획, 프로젝트 진행 현황 및 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진흥법제의 핵심 요소인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것도 필수적인데, 개정법에는 공공디자인 진흥

기금 또는 특별회계 설치 조항을 신설하고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지방비 매칭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또한 공공디자인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연계함으로써 민간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우수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자발적인 품질 향상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네 가지 원칙과 세부 방향은 현행법의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고 공공디자인법을 실효적 진흥법제로 전환하는 통합적 개혁 프레임을 구성한다.(표 8 참조)

[표 8] 개정 방향 및 주요 내용 요약

개정 방향	주요 내용 요약
공공디자인 정의·범위 보완	공공공간·공공건축물 등 대상 확대, 정의 명확화로 사업 적용 모호성 해소
진흥계획·집행·평가·환류 선순환	중앙·지자체 계획 연계 의무화, 예산 매칭·성과평가 시스템 도입, 환류 체계 구축으로 실행력 강화
공동통합심의 제도화	공공디자인·경관·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 통합 또는 연계 심의 도입, 일원화 심의로 절차 간소화
전문인력·전문조직 강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자격·인증제 도입, 공공기관의 전문인력 배치 의무화, 지원센터·진흥원 설립
정보체계 구축·성과 공개	정기적 실태조사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통계분석과 성과지표 공시로 정책투명성 강화
재정 기반·인센티브 마련	공공디자인 기금·특별회계 설치, 보조·세제 지원 근거 명시, 투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4-2. 전면 개정 법률 체계(안)과 주요 내용

앞서 논의한 기본 원칙과 구체적 제안을 법률 구조로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진흥법제의 일반적 입법 체계를 따르되 공공디자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총 7개 장 체계가 적합하다. 이는 법률의 목적과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총칙부터 정책 수립, 사업 추진, 지원체계, 재정 기반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로서, 사회적기업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기존 진흥법제의 입법례를 참조하되 공공디자인 분야의 고유한 특성, 예를 들면, 타 법령과의 광범위한 접점, 다양한 사업 유형, 전문성 요구의 다층성 등을 충실히 반영한 것을 의미한다.

제1장 총칙은 법률 전체에 대한 이념적 및 제도적 토대를 제공하는 장으로, 법의 목적과 공공디자인 관련 주요 용어의 정의, 중앙 및 지방정부의 책무, 타 법률

과의 관계를 명시해서 공공디자인 진흥정책의 이념적 기반과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한다.

제2장 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는 공공디자인 진흥의 핵심 수단인 5개년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 지방정부의 시행계획 수립 의무, 중앙·지방 간 계획 연계 방식을 규정하고,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 간 정책 조정을 위한 공공디자인정책협의회(가칭)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정책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항을 포함하여 계획·집행·평가·환류의 선순환 구조를 법령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한다.

제3장 사업의 전문성 확보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규율하는데, 공공기관의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시 전문인력 참여 의무, 공공디자인 전문자격의 인증 및 등록 기준, 총괄 디자이너 지정 등 전문인력 활용 체계를 명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디자인진흥원 또는 전담기관의 지정·설립 근거를 마련하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기준의 제정 절차, 권역별 지원센터 설치 등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조직적 기반을 구축한다. 특히, 국가공공디자인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진흥정책이 문화체육관광부 내 관련 부처·부서의 판단으로 진행되는 정책사업의 더욱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콘트롤타워의 역할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은 개별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절차를 규율하며, 사업 기획, 설계공모, 심의 및 자문, 시행,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사업 유형별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절차, 관계 기관 간 협의 방식, 공공디자인 적용 대상 시설물의 범위, 설계 기준 및 공모 지침, 심사 기준,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자격, 주민참여 절차를 구체화 또는 보완하며, 공공디자인 용역의 대가 산정 기준과 제안서 보상 등 사업 수행 단계의 세부 제도를 엄밀하게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특히 공공디자인법 시행 이후에도 충분한 교육의 부재로 공공디자인사업에 공공디자인전문회사가 입찰자격을 갖지 못하는 상황 등 실질적으로 공공디자인의 사업 추진에 있어 법리적 적용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제5장 공공디자인의 품격 제고는 우수 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는 장으로, 공공디자인 선도사업의 지정 요건 및 지원 방안, 우수 공공디자인 및 공공디자이너에 대한 인증·포상 제도, 국제 교류 및 협력 사업 등을 규정하여 공공디자인 분야의 창

의성과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국내외 우수 사례의 공유와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의 전개가 필요하다.

제6장 공공디자인진흥원 및 재정은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조직적·재정적 인프라를 규정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공디자인진흥원 설립 또는 지정 권한, 진흥원의 사업 범위와 운영 체계를 명문화하고, 공공디자인진흥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 재원의 조성과 배분 원칙, 기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규정하며,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및 보고 의무, 사업 점검 및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하여 정책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은 법률의 실효적 시행을 위한 보완적 규정을 담는 장으로,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세제 감면 및 재정 지원 우대 조치, 관계 기관의 협조 의무,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벌칙 및 과태료 등을 규정하며, 특히 타 법령과의 연계 조항을 통해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등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을 적극 마련하여 법적 구속력을 담보하여야 한다. 이는 진흥법제라는 이유로 도외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은 7개 장 체계는 공공디자인 정책의 수립부터 실행, 평가, 환류에 이르는 전 과정을 법률적으로 일관되게 규율하는 구조이다. 제1장에서 설정된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이 제2장의 계획 체계로 구체화되고, 제3장과 제4장에서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되며, 제5장에서 품질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 장치가 작동하고, 제6장에서 이를 뒷받침할 조직·재정 기반이 마련되며, 제7장에서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는 유기적 법체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법체계 재편을 통해 공공디자인법은 명실상부한 진흥법제로 전환되어, 공공디자인을 경관이나 건축의 하위 요소가 아닌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 영역의 질적 개선을 주도하는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확립할 수 있는 법제적 기반을 제공한다.

특히 목적 조항의 구체화, 계획·집행·평가·환류의 선순환 구조 확립,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체계의 구축, 재정 지원체계의 제도화 등 현행법의 결손 요소를 체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공디자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디자인법 제정 취지인 도시 환경의 질 향상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정책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9] 개정안의 기본체계

장(章)	핵심 내용
제1장 총칙	목적·정의·국가·지자체·책무·타법·관계 규정
제2장 정책	진흥종합계획 수립, 공공디자인정책협의회, 지역관리계획 수립, 정보체계 구축
제3장 사업의 내실화	공공기관 전문성 확보,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지원센터·위원회 설치, 디자인 기준 마련
제4장 사업 절차	공공디자인 기획·발주·시공 등 절차 규정, 성과 평가·용역대가 명시
제5장 품격 향상	선도사업 지정·실시, 우수디자이너·우수공공디자인 선정 제도화
제6장 진흥원 및 재정	공공디자인진흥원 설립·운영, 출연금·기금 규정, 자료제출·검사, 특별회계 설치
제7장 보칙	조세 감면, 자료제출·권한·위임 등 보완 규정

5. 결론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법을 진흥법제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법률 및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2016년에 제정된 공공디자인법은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적용 범위의 모호성, 지원 수단의 부족, 실행력 및 환류 체계의 미비, 전문성 기반의 취약성 등 여러 가지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이러한 한계는 공공디자인법이 일반적인 진흥 법제에서 기대되는 법체계적 요소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관광진흥법」, 사회적기업육성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유사한 진흥법제와의 비교뿐만 아니라,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추진 실적(2017~2022년 나라장터 공공디자인 관련 과업 1,639건 분석)과 공공디자인 사업 규모 변화, 공공디자인 관련 지자체 조례 243건에 대한 분석을 연계하여,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실제 정책 추진과 사업 구조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 목적의 구체화, 계획 및 평가의 선순환 체계 구축, 지원 수단의 다양화, 조직 및 재정 기반의 확충, 그리고 법령 간 정합성 확보 등을 포함한 전면 개정 방향성을 제시하고, 공공디자인법 개정안의 기본 체계를 제안하여 향후 입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공하였다.

전면 개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분명하다.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며, 평가와 환류를 통한 정책 학습 효과가 촉진되고, 재정적 조직적 지원으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법 및 제도 개선은 공공디자인의

품격 향상으로 이어져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는 공공디자인법이 지향하는 "국가 및 지역의 품격 제고와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라는 목표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선행 연구들이 공공디자인의 개념 및 가치 정립이나 제도 일부에 대한 부분적 분석,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비전 및 전략 체계 또는 개별 사업 성과 평가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온 반면, 본 연구는 진흥법제 간 구조 비교와 정량적 실적 자료, 조례 분석을 통합하여 입법 구조, 국가 계획, 사업, 조례를 연계한 진흥 체계를 하나의 축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러한 논의는 공공디자인법을 단순한 선언적 법률이 아닌 실질적인 진흥법제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도 설계 수준에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물론 법 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개정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세부 시행령과 지침 마련, 관계 기관 간 협력 강화,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 등 후속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공공디자인 정책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과 시민사회의 폭넓은 참여와 지원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법적 기반은 이러한 노력의 방향을 제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향후 공공디자인법 개정 논의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특히 진흥법제 일반 구조와 공공디자인 정책·환경·변화, 그리고 지자체 조례 및 사업 실적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결합한 본 연구의 논의가 공공디자인법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정하고 정책 대안을 검토하는 데 참고되기를 기대한다. 궁극적으로 공공디자인법의 발전은 공공디자인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목표의 달성과 직결되므로, 지속적인 학술적 관심과 제도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가 공공디자인법 및 제도 체계 개선의 출발점으로 기여하며, 나아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정책의 실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27호, 제정 2016.2.3), 「관광진흥법」(법률 제3799호, 제정 1986.12.31), 「사회적기업 육성법」(법률 제8217호, 제정 2007.1.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11409호, 제정 2012.5.2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법률 제11690호, 제정 2013.3.23.)
2. 김영, 이현성, 김주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및 심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2020
3.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 2018.
4. 최성호, 공공디자인법과 경관법의 역할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17
5. 최성호,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논문집, 2022
6. 박종준, 산업진흥법제의 규제혁신을 위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
7. 설영동, 장영호, 김주연, 공공디자인 개념 확장을 위한 방향성과 가치 유형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2023
8. 설영동, 가치기반 공공디자인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9. 손현, 진흥관련 법제의 입법 모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
10. 오성훈, 유광흠, 성은영 외 2인, 공간복지기본법 제정 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2020
11. 육근형, 공공디자인의 실효적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12. 육근형, 장영호, 공공디자인 진흥기관의 사례 분석과 적용 가능성,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2025
13. 윤인숙, 문화산업 진흥·육성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22
14. 채완석, 공공디자인 관련 기준 개정 방향 연구,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논문집, 2024
15. 황승흠, 황성기, 정상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보고서, 2016.